

의안번호	2217578
의 퇴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6.7.3.
추 계 번 호	26B1509

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,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6,350만원, 2031년 2,250만원 등 향후 5년간 8억 8,000만원(연평균 1억 7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 (안 제7조)	-	326	-	-	-	326	65
정책이주지 실태조사 (안 제10조)	441	-	-	-	-	441	88
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위원회 (안 제17조)	22.5	22.5	22.5	22.5	22.5	112.5	22.5
합계	463.5	348.5	22.5	22.5	22.5	880	176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)	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7조 (정책이주지 관리 ·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 행)	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·지원을 위하여 정 책이주지 관리·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2항) 1. 정책이주지의 현황 및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2. 주거·생활환경·안전 분야별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사업 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. 정책이주지의 관리·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.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사업의 성과 분석·평가 및 사후관리 에 관한 사항 5.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사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 계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제11조에 따라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3	안 제8조 (주민참여 및 의 견수렴)	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, 설명회, 세미나,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공청회등”이라 한다)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공청 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10조 (정책이주지 실태 조사)	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·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이주지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(제1항) 1.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 및 범위 2.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노후도 및 화재·급경사지 등 안전 취약에 관한 사항 3. 정책이주지의 기반시설 현황 4. 정책이주지 내 빈집·공가·폐가 등 현황	의무규정
5	안 제14조 (정책이주지 관리 · 지원사업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관리·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(제1항) 1. 이주지환경 개선사업 2.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화재·급경사지 등 안전취약 개선 사업 3. 정책이주지 내 빈집·공가·폐가 등 정비 및 공공활용에 관 한 사업 4.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5.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이주지 경관·커뮤니티 회복 사업	재량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6. 순환이주 및 임시거처 제공 등 지역주민 이주지원에 관한 사업 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
6	안 제15조 (순환이주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(이하 “순환이주”라 한다)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7	안 제17조 (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위원회)	정책이주지 정책의 심의·조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제2항)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. 정책이주지 지정·변경·해제에 관한 사항 3. 성과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. 정책이주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·연계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8	안 제18조 (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·기록·연구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·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관련 자료의 발굴·수집·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9	안 제19조 (재원의 확보 및 국고지원)	국가는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정책이주지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—	• (미대상)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해당 조문에서 추계함
2	안 제7조(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 소관 유사 법정계획 수립연구 용역비를 참고하여 추정하며,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(2028년)
3	안 제8조 (주민참여 및 의견수렴)	×	• (제3호)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주지의 주민참여와 의견조치 등이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이주지별 시행계획 수립 시점에서 발생할 사항이라 현시점에 구체적인 일정, 대상 이주지 수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4	안 제10조 (정책이주지 실태조사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 소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비용을 추정하며,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(2027년)
5	안 제14조 (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사업)·안 제19조(재원의 확보 및 국고지원)	×	• (제3호) 주거환경 개선, 안전취약 정비 사업비는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적규모, 노후 불량 주택 수, 기반시설 파손도 등이 종합된 후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어서 현시점에 추계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함
6	안 제15조 (순환이주 지원)	×	• (제3호) 임시거주 시설 확보 및 순환주택 건설 공급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나, 향후 정책이주지 지방자치단체별 이주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주 및 지원계획이 확정될 것이어서,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7	안 제17조 (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위원회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 소관 유사 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비용을 추정함
8	안 제18조 (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·기록·연구)	×	• (제3호) 자료 발굴 및 정리간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정책이주지별 구체적인 역사·기록·연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-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(2027년 완료), 2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(2028년 완료)하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안 제7조)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 - (유사사례) 주거종합계획 수립, 주거취약계층 지원계획, 빈집 등 관리·지원 기본계획 수립비용의 평균값은 3.3억원 수준임

[표 2] 유사 실태조사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수요기관	사업년도	사업비
주거종합계획 수립	국토교통부	2022	151
2026년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·정착 지원사업	한국토지주택공사	2025	498
부산광역시 10개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	부산광역시	2025	330
평균			326.33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(추계결과) 국토교통부 내 유사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참고하여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

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

- 부칙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계획 수립비용	-	326	-	-	-	326

□ (안 제10조)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와 범위, 시설 노후도 및 안전취약, 기반시설 현황, 빈집·공가·폐가 현황, 취약계층 분포 현황 및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 내 유사 실태조사 용역비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

- (유사사례) 유사사례 평균사업비는 4.4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

[표 4] 유사 실태조사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수요기관	사업년도	사업비
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거주상태 및 실태조사	서울특별시	2023	1,000
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	충청북도	2022	238
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	제주특별자치도	2025	84
평균			441

자료: 조달청 나라장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(추계결과)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 사업비를 참고하여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

-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태조사는 사업 첫 해에 실시(2027년)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정책이주지 실태조사	441	-	-	-	-	441

□ (안 제17조)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이 불확정적이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

- 위원수: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5인으로 가정
 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위원 수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, 유사사례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(총 29명, 민간위원 15명, 위촉비율 52%)의 인원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은 15인으로 가정함
- 개최일수: 연 5회로 가정
 - 개최일수는 유사사례 위원회(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연평균 5회) 최근 3년간 평균 개최일 수인 5회로 가정
- 회의참석수당 단가: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
 -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¹⁾, 유인물비 등 안건검토비 10만원

1) 기획재정부(2026)의 「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
 -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
 -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·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[표 6]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수: 2023~2025년

(단위: 일)

구분	본회의	분과위원회	합계
2023	3	—	3
2024	6	—	6
2025	5	—	5
평균	4.7	—	4.7

자료: 국토교통부 위원회 활동내역서(2026.3. 기준)

- (추계결과) 국토교통부 내 유사 위원회 운영비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7]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위원회운영비	22.5	22.5	22.5	22.5	22.5	112.5

- (일부추계)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정책이주지 관리·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8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정책이주지 관리·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 (안 제7조)	-	326	-	-	-	326
정책이주지 실태 조사 (안 제10조)	441	-	-	-	-	441
정책이주지 관리 · 지원위원회 (안 제17조)	22.5	22.5	22.5	22.5	22.5	112.5
합계	463.5	348.5	22.5	22.5	22.5	88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